

## 구로동 440번지일대(보광아파트)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로동440번지 일대(보광아파트)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

2023년 3월 10일

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구로동440번지일대(보광아파트) 재건축정비사업
2. 위치 및 면적  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40번지 일대  
나. 시행면적 : 32,953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
가. 명 칭 : 구로동440번지일대(보광아파트)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
나. 주사무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05, 4층  
다. 대표자 성명 : 임병훈  
라. 대표자 주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05, 4층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3. 03. 10.
6. 건축개요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면적  | 32,953㎡ (정비기반시설 6,391㎡, 획지 26,562㎡) |
| 건축면적  | 6,769.91㎡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건 폐 율 | 25.49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용 적 륜 | 243.53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 면 적 | 99,593.49㎡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규 모   | 9개동, 675세대, 지하2/지상20층               |
| 용 도   |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·복리시설                 |

7. 주택건설규모 : 공동주택(아파트) 9개동 675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
8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귀속 내용

가. 공원(어린이공원) : 1,651㎡

나. 도로 : 4,565㎡

다. 공공공지 : 175㎡

라. 토지귀속 내용 : 공원(어린이공원), 도로, 공공공지 설치 후 구로구에 귀속

9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| 전용면적(㎡) | 세대수   | 유형      | 구성비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전용면적<br>60㎡ 미만          | 49      | 65    | 분양      | 49.04%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59A     | 219   |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59B     | 32    |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59C     | 15    |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| 331   |         |        |
| 전용면적<br>60㎡ 이상 ~ 85㎡ 미만 | 74A     | 178   | 분양      | 50.96%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74B     | 39    |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84A     | 13    |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84B     | 12    |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84C     | 52    |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84D     | 50    |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| 344   |         |        |
| 계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675세대 | 100.00% |        |

10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인·허가 등 의제처리사항

가. 「주택법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
나.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
다. 「하수도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

라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

마. 기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 됨.